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4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가시험등 응시 제한 규정 정비	2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4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시험등 응시 제한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국가시험등 응시자격 제한 사유와 약사면허·한약사면허 결격사유를 일치시킴(안 제9조).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등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며¹⁾, 약사·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5조²⁾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음³⁾.

또한,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고,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간 국가

1) 「약사법」

제8조(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약사법」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⁴⁾.

□ 개정안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 제한 사유를 약사·한약사면허 결격 사유와 일치시키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법」 5)·「간호법」 6)·「의료기사법」 7)도 응시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 전반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체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약사법」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5)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6) 「간호법」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7)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약사·한약사의 국가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다음 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부정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세분화하여,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규정과 맞출 필요성에 공감함.
- (대한한약사회)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4